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면제〉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593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지영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23.
3. 회부연월일 : 2026. 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외에, 교과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의 확대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교과서와 같은 검증·인증 절차 없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학교 현장에 도입·활용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자료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의 활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요건을 반영한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2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령의 해당 기준에는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기준 중 교육 자료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생 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다만,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령의 기준에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기준 중 교육 자료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

<신 설>	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면제의 세부 범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육 자료로 구분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 시 단순 보조도구를 넘어 수업의 내용·방법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교수·학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¹⁾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데이터 및 행동데이터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증가하고,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안전성 문제, 학교별 자율적 선택 확대에 따른 품질 편차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시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1) 현행법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로서, 구체적으로 AI 팽톡, 푹푹! 수학탐험대, 구글 클래스룸, 캔바 등이 이에 해당함.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학교 단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학부모·교원 등의 참여를 통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²⁾

-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에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되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 또한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³⁾

특히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소프트웨어 도입 시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을 어렵게 하고, 안전 증가에 따른 회의 준비 및 자료 작성 부담을 초래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교육자료 선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원이 다양한 디

2) 2026년 2월 28일 기준 전체 12,115개 학교 중 9,940개(82.0%) 학교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현황> 참조

3) ‘AI 펍톡’이나 ‘똑똑! 수학탐험대’와 같이 교육부 또는 교육청 등 공공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정규 교과를 위해 사용되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학습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선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지텔 도구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I 기반 맞춤형 학습 등 수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반복적·형식적인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교육적 활용도가 높다거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②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기준 반영

- 한편, 현행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기준은 헌법 이념과 가치의 존중, 교육의 중립성 유지, 지식재산권의 존중,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 학습 활동 및 평가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교과용 도서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공적인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⁴⁾
-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기준을 정할 때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기준 중 교육자료에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4)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의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 2. 공통 인정기준과 교과목별 인정기준(예시) >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기준은 교육과정 준수,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확보, 저작권 보호 등 교육자료에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품질관리 및 교육적 적정성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와 달리 콘텐츠뿐만 아니라 플랫폼, 인공지능 기능, 데이터 처리 및 정보보안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기준 중 일부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⁵⁾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공정성 및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검정·인정 기준 중 일부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88

5)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활용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해당 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구성되며, 필수기준에는 최소처리원칙 준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등이 있으며, 선택기준에는 교육목표 및 학생 특성 적합성, 콘텐츠 품질 및 안정성 등이 있음.

< 참고 3.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 >

참고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현황

(단위: 교, '26.3.1. 기준)

연 번	지 역	전 체 학 교 수	'26.2.28.까지 심의를 완료한 학교 수	'26.3.1. 이후에 심의할 예정인 학교 수
1	서울	1,364	899 (65.9%)	465 (34.1%)
2	부산	644	513 (79.7%)	131 (20.3%)
3	대구	468	434 (92.7%)	34 (7.3%)
4	인천	569	490 (86.1%)	79 (13.9%)
5	광주	324	227 (70.1%)	97 (29.9%)
6	대전	312	262 (84.0%)	50 (16.0%)
7	울산	252	232 (92.1%)	20 (7.9%)
8	세종	109	91 (83.5%)	18 (16.5%)
9	경기	2,499	2,336 (93.5%)	163 (6.5%)
10	강원	645	448 (69.5%)	197 (30.5%)
11	충북	497	450 (90.5%)	47 (9.5%)
12	충남	722	650 (90.0%)	72 (10.0%)
13	전북	759	527 (69.4%)	232 (30.6%)
14	전남	830	495 (59.6%)	335 (40.4%)
15	경북	932	778 (83.5%)	154 (16.5%)
16	경남	997	953 (95.6%)	44 (4.4%)
17	제주	192	155 (80.7%)	37 (19.3%)
계		12,115	9,940 (82.0%)	2,175 (18.0%)

자료 : 교육부

공통 인정기준

심사 영역	심사 관점
I. 헌법 이념과 가치의 존중	1.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2.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3.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독도' 표시와 '동해' 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
	4.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인 태극기, 애국가 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바르지 않게 제시한 내용이 있는가?
	5.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II. 교육의 중립성 유지	6.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내용이 있는가?
	7. 특정 국가, 인종, 민족, 정당, 종교, 인물, 상품, 기관 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남녀의 역할, 장애, 직업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III. 지식재산권의 존중	8. 타인의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표절 또는 모작하거나,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

교과목별 인정기준(예시)

심사 영역	심사 항목
I. 교육과정의 준수	1.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과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2.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3.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4. 교육과정에 제시된 '평가'를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II. 내용의 선정 및 조직	5. 내용의 수준과 범위 및 학습량이 적절한가? 6. 내용 요소 간 위계가 있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7.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 제재, 소재 등을 선정하였는가? 8.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역량 및 기초 소양 함양이 가능하도록 학습 내용을 조직하였는가? 9.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선정 및 조직하였는가? 10. 단원의 전개 및 구성 체제가 학습에 효과적인가?
III.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11. 사실, 개념, 용어, 이론 등은 객관적이고 정확한가? 12. 평가 문항의 질문과 답에 오류는 없는가? 13. 사진, 삽화, 통계, 도표 및 각종 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서 출처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가? 14. 한글, 한자, 로마자, 인명, 지명, 각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계량 단위 등의 표기가 정확하며,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기준을 충실히 따랐는가? 15. 문법 오류, 부적절한 어휘 등 표현상의 오류가 없고 정확한가? 16. 특정 지역, 국가, 인종, 민족, 문화, 계층, 성, 종교, 직업, 집단, 인물, 기관, 상품 등을 비방·왜곡 또는 옹호하지 않았으며, 집필자 개인의 편견 없이 공정하게 기술하였는가?
IV. 학습 활동 및 평가 지원	17. 학습 활동 및 평가 과제는 교과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18. 학습 활동 및 평가 과제가 학생의 수준에 적절하며, 수행이 가능한가? 19. 학생의 역량 및 기초 소양 함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 활동 및 평가 과제를 제시하였는가? 20.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고 학생의 참여와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 활동 및 평가 과제를 제시하였는가?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장관 고시 인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기준」, 2024. 11.

참고 3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

< 필수기준 내용 >

선정기준	세부 내용
①최소처리원칙 준수	•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되는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보유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②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③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 이용자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가?
④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등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⑤보호책임자/제3자 제공/위탁 등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정보가 안내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필요시) • 개인정보 위·수탁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필요시)

< 선택기준 주요 내용 >

선정기준	세부 내용
①교육목표 및 학생 특성 적합성	수업 목표와 학생의 학습 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기능을 제공하는가?
②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	학습 콘텐츠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학생 연령에 적합·안전한가?
③사용 환경 적합성	학교의 기기·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④접근성 및 사용성	교사와 학생이 필요한 기능과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⑤서비스 운영 및 지원 체계	이용 안내, 기술 지원, 문의 대응 등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